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067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증요건 유지여부의 자체점검 등 의무 부여	3

I. 개요

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06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2. 10.

(3) 회 부 일 : 2025. 12.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하고 원산지 자율증명 허용 또는 증명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원산지인증수출자 대상 점검 결과 약 49%의 기업이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2년마다 원산지 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증요건 유지여부의 자체점검 등 의무 부여 (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원산지인증수출자(§12) ○ 원산지인증수출자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 - 해당물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 가능 및 원산지증명에 관한 간소 절차 적용 가능 ○ <신 설>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취소 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증 요건 유지여부의 자체점검 등 의무 부여 ○ (현행과 같음) ○ 자체점검의무의 신설 - 2년마다 원산지증명능력등의 요건유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거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이하 “자체점검”) - 자체점검 결과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 - 자체점검 결과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시정 요구 가능 ③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정태호의원안 2025. 12. 10. 제출(의안번호 15067)

☐ 개정안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2년마다 인증요건 충족여부에 대

한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자체점검 결과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출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¹⁾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능력 등²⁾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함.³⁾⁴⁾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HS 6단위를 기준으로 개별 수출물품별로 인증을 받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됨.

1) 이러한 제도는 한국·EU FTA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건당 6천유로 이상을 수출할 경우 인증받은 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FTA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원산지국가의 특정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과,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해당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하는 자율발급방식으로 구분됨. 현재 한국·인도, 한국·중국 등의 FTA에 대해서는 기관발급방식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한국·미국, 한국·EU 등의 FTA에 대해서는 자율발급방식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함. 이 중 한국·EU, 한국·영국, 한국·이스라엘 FTA에 대해서는 수출물품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일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법」, 도서출판 청람

2)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출자를 말한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일 것
 -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3)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 4) 수입통관에서 원산지 증명이 요구 되는 경우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것과, 비특혜목적의 확인을 위한 두 가지로 구분됨. 특혜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있어 관세율 인하 또는 무관세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며, 비특혜목적이란 긴급수입제한, 덤핑방지관세, 혹은 원산지의 표시 등 특혜관세와 관련없는 목적 등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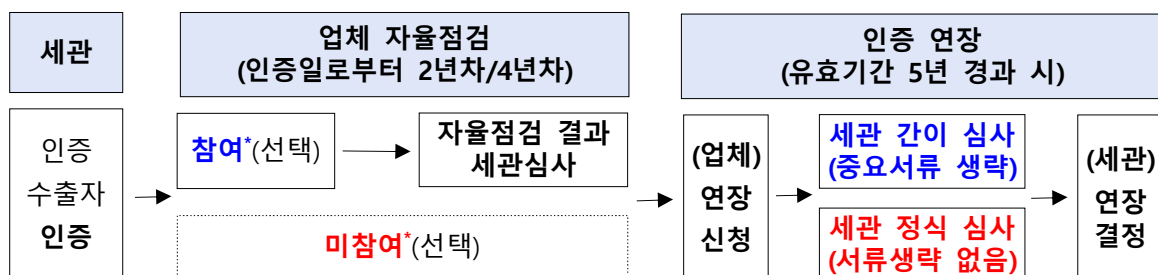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 (효력) 인증받은 업체는 수출하는 모든 해당 FTA, 모든 품목에 대해 효력 ▶ (유효기간) 5년 ▶ (업체) 1,549개('25년) ▶ (요건) 수출물품 원산지증명능력(원산지관리 시스템),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법규준수도 요건 충족	▶ (효력) 인증받은 해당 품목(HS6단위) 및 FTA에만 효력(품목별FTA별 인증) ▶ (유효기간) 5년 ▶ (업체) 13,923개('25년) ▶ (요건) 수출(인증)물품 원산지충족,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 * 법규준수도 요건 없음

자료: 재정경제부 제공

□ 현행법은 원산지증명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재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에 대한 관리는 크게 세관 사후관리와 업체 자율점검을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자율점검 흐름도 >



* (업체 택일 가능) 2년마다 자율점검 참여** + 5년마다 간소한 인증연장 심사
vs. (자율점검 미참여) + 5년마다 정식 인증연장 심사

** ('25년 기준) 전체 인증수출자(15,472개) 중 자율점검 참여업체(2,571개)는 16.6% 수준

자료: 재정경제부 제공

세관 사후관리⁵⁾는 선별기준에 해당하는 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인증요건 유지여부를 세관이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관리 방식이고, 업체 자율점검 방식⁶⁾은 전체 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인증요건 유지여부를 매 2년마다 업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결과를 자율적으로 제출하여 관리하는 방식임.

관리 결과 인증요건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세관은 인증요건을 구비하도록 시정요구⁷⁾ 할 수 있으며,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⁸⁾

5)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선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관리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통하여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이하 "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이라 한다) 할 수 있다.

1.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2. 인증품목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3.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5.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보 또는 첩보를 입수한 경우
6.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7. 제16조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통보서에 작성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한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1회차: 인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2. 2회차: 인증 후 4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2호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9항에 따른 시정을 받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을 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

□ 개정안은 이에 더해 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요건 유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이하 “자체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자체점검 결과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인증 취소 사유에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인증수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자율증명 및 절차 간소화와 결부되어 특례적 성격이 강하고, 인증요건의 지속적 충족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존재함. 현행은 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자체점검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할 경우, 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자체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인증수출자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2022년도에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 중 인증요건이 부적정하거나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이 전체 인증수출자 기업의 약 49%에 해당하여 관리가 소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수출인증자의 자체점검 제도 도입을 통한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음.

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1차 점검 결과 >

- (점검 기간) '25. 4~7월
- (점검 대상) '22년도에 인증받은 기업 총 3,972개社*
- * 실제 점검은 3,219개社 / 전체 인증수출자(약 1만5천개)의 약 20%
- (점검 결과) 부적정·점검 미완료 1,959개社 (49%=1,959/3,972)

점검 대상 (‘22년 인증기업)	실제 점검	점검 결과 (부적정+점검 미완료=1,959)		
3,972	3,219 (자율점검 참여社 753개 제외)	적정	부적정	점검 미완료 (미회신·연락불가)
		1,260	1,464	495

- 부적정(1,464社) 사유

부적정 사유	기업수(비중%)
①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최근 2년 이내 교육 미이수	1,251 (85.5)
②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변경되었으나 미지정	133 (9.1)
③ 업체의 자발적 인증 취소요청 및 폐업 등	80 (5.5)
합 계	1,464 (100)

- 1) ①: 원산지관리전담자의 대부분은 교육이수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교육 유효기간(2년)** 도래 사전알림이 없어 담당자가 재이수 놓치는 사례 발생
- 2) ①②: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은 업체별·품목별 인증요건에 해당하며, 요건 미비 시 **30일 이상의 시정요구 기회 부여 대상**(미시정 시 인증취소)
(FTA관세칙 §17⑨·18④)

자료: 재정경제부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현행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⁹⁾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관은 인증요건

9)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2년마다 자체점검을 통해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게 할 경우 점검 업무량 증가, 외부전문가 위임 점검시의 경제적 부담 등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또한, 개정안과 같이 자체점검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인증수출업자의 자율점검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고, 이 경우 일부 기업의 인증 탈락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음.¹⁰⁾¹¹⁾

□ 둘째, 상대국의 검증 요청 및 원산지 인증과 관련된 우리나라 인증수출자의 위반 추이를 고려할 때 제도 신설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원산지 관련 수출 검증 요청은 전반적인 감소 추세이며, 검증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수출검증 요청 건수 및 수출검증 위반률]

단위: 건,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출검증요청	703	714	412	370	461	468
수출검증위반률	11	11	12	17	17	16

자료: 재정경제부

특히, 최근 원산지 우회 논란 등 대미 수출 관련 원산지 검증은 인

10) 재정경제부 의견에 따르면, 인증수출자의 약 86%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잦은 점검주기에 적기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나 전담자 정기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시정요구 사항으로 인한 부적정 결과로 인증탈락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함.

11) 한·EU, 한·영국, 한·이스라엘 FTA에 대해서는 수출물품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일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법」, 도서출판 청람

증수출자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 수출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²⁾

추가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이후 인증취소 사유에 따른 취소사례¹³⁾가 전무하고, 거짓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고의로 인한 처벌사례도 많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⁴⁾

문 의 처
02)6788-5158

12) 한국·미국 FTA에서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인증수출자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음(2025.9.기준 대미 전체 수출기업 24,848개 중 인증수출자는 6,080개로 약 24.5%).

13) 인증취소 사유는 거짓, 부정 인증(필수적 취소사유), 인증요건 미충족(원산지전담관리자 미지정·운영,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작성·발급, 서면·현지조사 거부 등).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 인증유효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4) 거짓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고의로 인한 처벌사례는 2020년 6건, 2021년 2건, 2022년 15건, 2023년 10건, 2024년 7건, 2025년 12건임.